

시네마 뒤 몽드 지원제도

세부 사항

Aide aux cinémas du monde

Document complet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안녕—프랑스: 프랑스로케이션 지원제도 소개

시네마 뒤 몽드 지원제도

안녕—프랑스

Hello-France

시네마 뒤 몽드 지원 제도란 해외에 소재한 영화 제작 기업과의 영화 공동제작의 일환으로,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에 주어지는 선별적 지원을 말한다. 극장 최초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장편 극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혹은 창작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젝트에 국한되며, 영화의 최종 상영 시간이 한 시간을 초과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연출 전(제작 단계의 지원) 또는 포스트-프로덕션 단계(후반작업의 지원)에서 지급될 수 있다.

'제작 단계의 지원'에 대한 신청서는 해외의 영화제작 기업과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¹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본 문서의 부록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에 속하는 영화제작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프로젝트가 채택되었을 경우에,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¹과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 사이의 협약 수립을 위해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¹과 체결한 공동제작 계약서가 요구된다. '후반작업의 지원'에 대한 신청서는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¹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연출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목차

자격 조건	3
위원회의 구성	4

A. 제작 단계의 지원

1. 프로젝트 심사 및 지원 결정	5
2. 지원금 액수	6
3. 지원금의 지급	7
4. 비용 지출의 의무	7
5. 제작 단계의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8

¹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설을 이용해 실제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이며, 그 본사가 프랑스, 혹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위치한 기업을 말한다. 만약 본사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위치한 경우, 프랑스에 소재해야 한다는 조건은 지원금 지급 시기에만 지부 혹은 상설대리점과 같은 안정적 형태 하에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충족하면 된다.

6. 재정적 수당 'DEENTAL-ACP' 10

B. 후반작업의 지원

1. 프로젝트 심사와 지원 결정..... 12

2. 지원금 액수 13

3. 지원금의 지급..... 13

4. 비용 지출의 의무..... 14

5. 후반작업의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14

부록 1 17

부록 2 18

부록 3 19

자격 조건

-
1. 영화 각색권 혹은 그에 대한 독점 및 갱신에 대한 옵션 권리는 프로젝트의 공동제작 기업들 중 한 곳이 소유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의 감독은 외국인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프랑스인 재외국민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영화의 제작 언어는 프랑스어일 수 없다.
 3. 영화의 주요 제작 언어는 촬영이 이루어지는 영토(또는 영토들)가 속한, 해외 국가(또는 국가들)의 공용어 혹은 그곳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언어이거나, 프랑스인 재외국민 감독이 거주하는 해외 국가(또는 국가들)의 공용어 혹은 실제 통용되는 언어이다.
 4. '제작 단계의 지원'에 대한 신청서는 촬영의 시작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5. 본 시네마 뒤 몽드 지원 제도는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에서 수여하는 연출 전 후 지원금('선별지원금')과 중복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프로젝트로 두 지원금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독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제도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본 시네마 뒤 몽드 지원 제도는 국제세액공제(C2I 또는 TRIP)와 중복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7. 본 시네마 뒤 몽드 지원 제도는 프랑스영상물지원지금(FSA)의 제작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8. 영화의 최종 제작비가 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영화는 CNC의 승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각각 연임이 가능한 1년의 임기로 지명된다.

위원회 내에는 두 개의 모임이 존재한다.

- 첫 번째 모임은 위원장, 1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접수된 프로젝트 중에서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 작품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두 번째 모임은 위원장, 1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접수된 프로젝트 중에서 이미 최소 두 편 이상의 장편 영화를 연출한 경력이 있는 감독의 영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장편 영화란, 최종 상영 시간이 크레딧을 제외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영화로, 프랑스 또는 해외의 극장 내 최초 상영되었거나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적이 있는 작품이다.
- 공동 연출일 경우, 만약 두 감독 중 하나가 '인정을 받은(극장에서 개봉했거나, 영화제에 출품된 최소 두 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한)' 경우라면, 해당 프로젝트는 위원회의 두 번째 모임의 심사 대상이 된다.

A. 제작 단계의 지원

지원서는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본 문서의 8페이지, '제작 단계의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항목을 참고할 것)

하나의 영화제작 기업은 모든 모임을 통합하여 각 위원회 별 최대 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집 일정은 연4회로 예정되어 있다. 해당 일정은 www.cnc.fr과 www.institutfrancais.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신청 일자를 비롯한 상세한 모집 일정은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의 온라인 홈페이지의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cnc.fr/web/en/funds/aide-aux-cinemas-du-monde_190870

1. 프로젝트 심사 및 지원 결정

프로젝트의 심사는 다음의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1. 두 모임 모두 프로젝트들은 우선, 위원장, 1명의 부위원장, 1 명의 위원, 그리고 2 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사되며, 이를 통해 첫 번째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
2. 다음으로, 선별된 프로젝트들은 각 모임의 위원 모두에 의해 심사되며, 이를 본회의라 한다. 본회의가 프로젝트의 예술성과 실현가능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CNC 국장과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이 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지원금 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자료가 수혜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최대 18개월 내에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않을 시, 지원 결정은 무효가 된다. 다만, 영화제작 기업의 정당한 요청이 있다면, 위의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될 수 있다.
3. 지원금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두 모임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CNC 와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의 대리인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채택한 지원서를 심사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및 회계 자료를 통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산정위원회는 연 8~10회 소집되고, 자세한 일정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산정위원회로의 통과는 제작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금 산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문서의 부록3에서 정한 구비서류 참고)

지원금산정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CNC국장과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의 공동 결정에 의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만약 계약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자료가 지원금 산정에 대한 결정이 수혜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결정은 무효가 된다.

비고: 탈락한 프로젝트는 다음 사항이 가능하다:

- 다음 번 신청(두 번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첫 번째 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수정 및 변화를 명시 문서를 신청서에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를 새롭게 심사한다.
- 심의위원회가 주체적으로 명시적이고 정당한 제안을 제시할 경우에 한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본회의의 소집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집필을 거친 프로젝트의 제출 기한은 제작자의 재량에 있다.
- 본회의의 주체적 결정에 따라 다음 본회의 때 최종 심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 '후반작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본 문서 12 페이지 참고)

위의 선택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복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2. 지원금 액수

한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액수는 최대 25만 유로이다.

다만, 총예산이 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프랑스 주도의 작품에 대해 지원 가능한 금액은 45만 유로이다.

여기서 '프랑스 주도의 작품'이란, 국제공동제작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 중에서 자금조달 부분에 있어 프랑스 기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프랑스 소재의 하나 혹은 다수의 영화제작 기업이 원작 또는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인수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작품에 지급될 수 있는 프랑스의 공공 지원의 총액(시네마 뒤 몽드 지원 금액 포함)은 영화의 자금 조달에 있어 프랑스 기업이 출자한 몫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에 한해 위의 비율은 80%가 될 수 있다:

- 첫 번째 모임의 심사 대상 자격을 갖춘 작품(감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장편 작품)
또는
- 본 문서 부록2의 목록에 해당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
또는
- 최종예산이 125만 유로 미만인 작품.

3. 지원금의 지급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²과 국립영상센터(CNC)간 협약의 대상이 된다. 협약은 지원금 지급 방식과 수령한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 상환 조건을 정한다.

협약의 체결을 위해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²은 본 문서의 부록3에서 명시한 자료 전부를 포함한 완전한 서류를 CNC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이 영화의 제목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CNC 에 의해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 **1회분(60%)**은 협약의 체결 시 지급된다:

CNC의 승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총 제작비 250만을 초과하는 영화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 즉 '승인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협약이 수립될 수 있다.

1. **2회분(잔금)(40%)**은 서류 제출 시 지급된다(부록3 참고):

공인회계사에 의해 공증을 받은 요약된 비용 명세서(CNC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³), 그리고 채택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령한 지원금 총액이 확인 가능하고 협약에서 정한 지출의 의무를 준수하여 프랑스 및 해외 국가에서 소비된 지출내역을 증명하는, 프로젝트 명목으로 작성된 증빙서류. (부록3 참고)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48개월의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의 총액은 CNC로부터 지급될 수 없다.

지원금은 반드시 그 대상인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반드시 신청 당시의 감독에 의해서 연출 되어야 한다. 권리의 양도나 제작사 변경이 있을 경우, 기관은 서류와 지원금의 산정 내역을 재검토할 권리가 있다.

4. 비용 지출의 의무

a) 지급된 지원금의 최소 50% 이상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소비 되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프랑스 내에서의 지출은 예술작품 저작권, 제작 및 포스트-프로덕션 비용이며,

다음을 제외한다:

제작팀의 임금(제작자, 행정직, 관리직, 제작/포스트-프로덕션 보조 또는 비서), 배우의 임금, 출장 및 운송비(다만, 재화, 예술 및 기술적 기기의 운송과 영화제작 시 반드시 필요한 기술팀의 교통비는 인정될 수 있음), 일반 경비.

2 페이지, 하단 각주 참고.

3 (CN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프랑스어만 가능)).

b) 본 문서의 부록1의 목록에 해당하는 국가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과 공동으로 제작된 작품일 경우, 지원금의 최소 25% 이상이 해당 국가(혹은 국가들)의 영토 내에서 추가로 소비 되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해외에서의 지출은 촬영과 관련된 비용이며, 다음 비용을 제외한다:

제작팀의 임금(제작자, 행정직, 관리직, 제작/포스트-프로덕션 보조 또는 비서 등), 출장 및 운송비, 일반 경비.

중요:

시네마 뒤 몽드 지원에 따른 지원금 중 잔금의 지급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 명세서를 비롯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부록3의 3°)를 CNC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비용 명세서 요약본의 형식을 사용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nc.fr/professionnels/aides-et-financements/multi-sectoriel/production/aide-aux-cinemas-du-monde_190862 CNC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프랑스어만 가능).

'비용 명세서'에 기입한 지출내역마다 제작사는 관련 증빙서류(금액이 유로로 표기된 청구서, 임금명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 영화제, 운송, 소모품, 식비, 숙박비, 택시, 인쇄, 통화, 심부름에 관련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비용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는 시네마 뒤 몽드팀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c) 수혜자인 제작사는 지원금 총액의 최대 1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유할 수 있으며, 잔금의 지급 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

5. 제작 단계의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프로젝트의 제출은 오로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CNC 의 온라인 홈페이지(www.cnc.fr)의 '전문가(Professionnels)'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인 '지원 및 자금조달(Aides et financements)'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지원과 위원회 일정 조회에 대한 가이드는 '시네마 뒤 몽드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nc.fr/web/en/funds/aide-aux-cinemas-du-monde_190870

온라인 등록 대상 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이 요구된다. 다음의 자료는 디지털 문서 형식으로 첨부해야 하며, 그중 앞에 *표시가 붙은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이다.

재제출의 경우, 재집필에 대한 문서 (프랑스어).

*프로젝트의 시나리오 (프랑스어).

원어 시나리오(선택사항).

*짧은 시놉시스(최대 300자) (프랑스어).

*긴 시놉시스(최대 2000자) (프랑스어).

*감독의 의도 (프랑스어).

*제작자의 의도 (프랑스어).

*감독의 이력서.

*모든 제작자의 이력서.

시각 자료(파일 당 최대 5MB)를 함께 첨부할 수 있음.

*파트너(또는 파트너들)와 체결한 모든 공동제작 계약서(혹은, 이 단계에서는 계약 당사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해외의 영화제작 기업(또는 기업들)과 계약할 의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예비 서류도 가능).

*연대 서명한 저작권(또는 저작권들) 및 옵션 권리의 양도 계약서(또는 계약서들).

*감독(또는 감독들)의 권리 계약서(또는 계약서들).

*원작 각색권에 대한 계약서(또는 계약서들).

*프랑스 소재 기업의 경우, 발급일이 3개월을 지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K-Bis) 발취본.

중요: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자금조달 및 견적 계획서는 필요하지 않음.

우편 제출 대상 서류:

1.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서명을 날인한 신청서 인쇄본 1 부(위의 첨부서류는 제외): 서명은 프랑스인 제작자가 해야 하나, 부록 1의 목록에 해당하는 국가일 경우에, 서류 제출 단계에 프랑스인 제작자가 없다면 외국인 제작자의 서명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감독의 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서류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가 첫 번째 모임의 심사 대상인 경우: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
Institut français, Département Cinéma – Nathalie Streiff
8/14, rue du Capitaine Scott – 75015 Paris
 - 프로젝트가 두 번째 모임의 심사 대상인 경우: 국립영상센터(CNC)
CNC, Direction des Affaire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AEI) – Chrystelle Guerrero
291, boulevard Raspail – 75675 Paris Cedex 14
2. 감독의 이전 작품(또는 작품들):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 감독의 이전 작품들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링크('필모그래피' 형식의 페이지 주소와 접속 비밀번호를 표기할 것).
 - DVD(또는 DVD 들) 10 부.

시네마 뒤 몽드 지원 신청서의 완전한 서류는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와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의 부서에 의해 사전 심사를 거친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가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심사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자동응답 확인 이메일의 수령과 함께 신청서가 문제 없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제작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www.cnc.fr의 '마이페이지(MON ESPACE)'를 통해 심사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매 선별 단계마다 이메일로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의 접수는 매 회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일정은 CNC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의점: 만약 신청자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고지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마감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따로 보관하지 않으며, 다음 접수 기간에 자동 등록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음 기회에 다시 접수해야 한다.

주의점: 만약 CNC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프로젝트의 공동제작 기업 중 한 곳에서 해당 영화 각색권 및 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는 즉시 거부된다.

연락처

프랑스 로케이션 문의: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 영상교류팀

한국어·프랑스어·영어 가능

hello-france@kr.ambafrance-culture.org

02.317.8511

6. 재정적 수당 'DEENTAL-ACP'

2020년 7월 본회의부터, 시네마 뒤 몽드 지원의 제작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재정적 협력과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기구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DEENTAL-AC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정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 감독이 ACP 국가 출신 외국인이어야 하고, 공동 제작자 중 ACP 국가 출신이 ACP 이외 국가의 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수당의 산정: 수당의 액수는 시네마 뒤 몽드 지원의 지원금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프로젝트 제작의 지원으로 지급된 액수의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다만 상한액은 프로젝트당 20만 유로로 한다.**

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DEENTAL-ACP 프로그램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nc.fr/web/en/funds/deental--acp-programme_1319456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차드, 토고, 잠비아, 짐바브웨.

비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공동제작자는 될 수 있으나 수당 신청자는 될 수 없다.

카리브해: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기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태평양: 피지, 쿡 제도, 마셜 제도,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연방,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동티모르,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B. 후반작업의 지원

오직 '시네마 뒤 몽드 지원의 '제작단계의 지원'에서 탈락한 프로젝트와 공식 상영된 적이 없는 영화만이 후반작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화제에서 상영된 프로젝트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후반작업의 지원 신청이 해당 영화제 이후의 첫 번째 요청일 경우에 한하며, 후반작업의 지원의 필요성이 정당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후반작업의 지원 신청서는 영화의 최종 편집본, 혹은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영화의 예상 상영 시간과 비슷한 길이의 사전편집본을 바탕으로 심사된다. 만약 영화의 언어가 프랑스어가 아니라면, 반드시 프랑스어나 영어로 된 자막이 있어야 한다. (본 문서의 14페이지, '후반작업의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참고)

한 영화 제작 기업은 각 위원회의 각 모임당 하나의 후반작업의 지원만을 신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제출은 오로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CNC의 온라인 홈페이지(www.cnc.fr)의 '전문가(Professionnels)'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인 '지원과 자금조달(Aides et financements)'에서 가능하다.

프로젝트 공고일과 일정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CNC 온라인 홈페이지의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nc.fr/web/en/funds/aide-aux-cinemas-du-monde_190870

1. 프로젝트 심사와 지원 결정

프로젝트의 심사는 다음의 2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1. 프로젝트는 두 모임 각각에 있어, 모임의 모든 위원에 의해 심사되며, 이를 본 회의라 한다.
본 회의에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위원회의 새로운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2. 지원금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두 모임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와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의 대리인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채택한 지원서를 심사하는데, 프로젝트의 진행 및 회계 자료를 통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산정위원회는 연 8~10회 소집되고, 자세한 일정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산정위원회로의 통과는 제작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금 산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문서의 부록3에서 정한 구비서류 참고)

위원회의 프로젝트 채택과 지원금산정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CNC 와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의 공동 결정에 의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2. 지원금 액수

지원금의 액수는 후반작업의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당 **최대 5만 유로**까지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한 작품에 지급될 수 있는 프랑스의 공공 지원의 총액(세계영화지원 금액 포함)은 영화의 자금조달에 있어 프랑스 기업이 출자한 몫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에 한해 **위의 비율은 80%가 될 수 있다:**

- 첫 번째 모임의 심사 대상인 작품(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 작품)

또는

- 부록2에 해당하는 국가와 공동제작하여 연출된 작품

또는

- 최종 예산이 125만 유로 미만인 작품.

3. 지원금의 지급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⁴과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 간 협약의 대상이 된다.

협약은 지원금 지급 방식과 수령한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상환 조건을 정한다. 협약의 체결을 위해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은 본 문서의 부록3에서 명시한 자료 전부를 포함한 완전한 서류를 CNC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프랑스 소재의 영화제작 기업이 영화의 제목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지원금은 CNC에 의해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부록3 참고)

1. 1회분(60%)은 협약의 체결 시 지급된다.

2. 2회분(잔금)(40%)은 서류 제출 시 지급된다(부록3 참고): 공인회계사에 의해 공증을 받은 요약된 비용 명세서(CNC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⁵)와 채택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령한 지원금 총액이

⁴ 2 페이지, 하단 각주 참고.

⁵ 요약된 비용 명세서는 다음의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 장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확인 가능하고 협약에서 정한 지출의 의무를 준수하여 프랑스 및 해외 국가에서 소비된 지출내역을 증명하는, 프로젝트 명목으로 작성된 증빙서류. (부록3 참고)

4. 비용 지출의 의무

지원금의 잔금 지급을 위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령한 지원금 총액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혜자인 감독이 일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금 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금액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원금의 최소 50% 이상은 포스트-프로덕션에 대한 지출(임금, 출장비, 제작자 경비 지불은 제외)이어야 하며,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후반작업의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프로젝트의 제출은 오로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CNC 의 온라인 홈페이지(www.cnc.fr)의 '전문가(Professionnels)'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인 '지원 및 자금조달(Aide et financements)'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지원과 위원회 일정 조회에 대한 가이드는 '시네마 뒤 몽드 영화'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nc.fr/web/en/funds/aide-aux-cinemas-du-monde_190870

지원 신청서는 영화의 최종 편집본,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영화의 예상 상영시간과 비슷한 길이의 사전 편집본을 바탕으로 심사된다. 만약 영화의 언어가 프랑스어가 아니라면, 반드시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된 자막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 대상 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이 요구된다. 다음의 자료는 디지털 문서 형식으로 첨부해야 하며, 그중 앞에 *표시가 붙은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이다.

후반작업의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제작자의 의도(특히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추가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포함할 것).
- *감독의 의도.
- *감독의 이력서.

https://www.cnc.fr/professionnels/aides-et-financements/multi-sectoriel/production/aide-aux-cinemas-du-monde_190862

CN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프랑스어만 가능).

- *모든 제작자의 이력서.
- *예산 견적서(프랑스와 해외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포함할 것) - 단위: 유로.
- *예산 포스트-프로덕션 비용의 구체적인 목록(프랑스에서의 예산 비용과 용역 명단을 포함할 것).
-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서(진행중/확보한 자금과 신청한 시네마 뒤 몽드 지원금 총액을 포함할 것) - 단위: 유로.
- *공동제작 계약서.
- *연대 서명한 저작권(혹은 저작권들) 및 옵션 권리의 양도 계약서(혹은 계약서들).
- *감독(혹은 감독들)의 권리 계약서(혹은 계약서들).
- *원작 각색권 계약서(혹은 계약서들).
- *프랑스 소재 기업의 경우, 발급일이 3 개월을 지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K-Bis) 발췌본.
- *경우에 따라, 영화시청각공공대장(RPCA) 등록증.
- *ISAN 번호.
- *진행중인 편집본에 대해(반드시 프랑스어 혹은 영어 자막이 있어야 함),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시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
(페이지의 주소와 해당 서식을 열람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함께 표기할 것).
 - 해당 편집본의 DVD 8 부.

시네마 뒤 몽드 지원 신청서의 완전한 서류는 CNC와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의 부서에 의해 사전 심사를 거친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가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가 프로젝트를 심사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자동응답 확인 이메일의 수령과 함께 신청서가 문제 없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제작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www.cnc.fr를 통해 심사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매 선별 단계마다 이메일로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의 접수는 매 회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일정은 CNC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의점: 만약 신청자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고지된 접수 마감일 이전에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마감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따로 보관하지 않으며, 다음 접수 기간에 자동 등록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음 기회에 다시 접수해야 한다.

주의점: 만약 CNC 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프로젝트의 공동제작 기업 중 한 곳에서 해당 영화의 각색권 및 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는 즉시 거부된다.

연락처

프랑스 로케이션 문의: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 영상교류팀

한국어·프랑스어·영어 가능

hello-france@kr.ambafrance-culture.org

02.317.8511

주의: 전세계의 모든 국가는 '시네마 뒤 몽드 지원'의 신청 대상이다.

다만, 특정 국가(부록 1 과 2 에 해당)와의 공동제작인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이 제기된다.

부록 1

국가 목록:

- 다음의 국가에 소재한 영화제작 기업과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일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다음의 국가에 소재한 영화제작 기업과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일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사우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니	도미니카 공화국
알제리	적도 기니	르완다
앙골라	기아나	세인트키츠 네비스
앤티가 바부다	아이티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방글라데시	쿡 제도	세인트루시아
바하마	마셜 제도	사모아
바베이도스	솔로몬 제도	상투메프린시페
벨리즈	자메이카	세네갈
베냉	케냐	세이셸
부탄	키리바시	시에라리온
미얀마	라오스	소말리아
보츠와나	레소토	수단
부르키나 파소	레바논	남수단
부룬디	라이베리아	수리남
캄보디아	마다가스카르	에스와티니
카메룬	말라위	탄자니아
카보베르데	말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팔레스타인 영토
코모로	모리셔스	티모르
콩고공화국	모리타니	토고
코트디부아르	미크로네시아 연방	통가
쿠바	모잠비크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연방	나미비아	튀니지
지부티	나우루	투발루
에리트레아	네팔	바누아투
에티오피아	니제르	베트남
피지	나이지리아	예멘
가봉	니우에	잠비아
감비아	우간다	짐바브웨
가나	팔라우	
그레나다	파푸아뉴기니	

부록 2

다음의 국가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의 경우, 프랑스의 공공 지원의 총액(시네마 뒤 몽드지원 금액 포함)은 영화의 자금조달에 있어 프랑스 기업이 출자한 몫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6 와 13 페이지, '지원금 액수' 참고)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몰도바	수리남
알제리	피지	몽골	에스와티니
앙골라	가봉	몬테네그로	시리아
앤티가 바부다	감비아	모잠비크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가나	나미비아	탄자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레나다	나우루	차드
방글라데시	과테말라기니	네팔	팔레스타인 영토
벨리즈	기니비사우	니카라과	태국
베냉	적도 기니	니제르	티모르
부탄	기아나	나이지리아	토고
벨로루시	아이티	우간다	통가
미얀마	온두라스	우즈베키스탄	튀니지
볼리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보츠와나	이란	팔라우	투발루
부르키나 파소	자메이카	파푸아뉴기니	우루과이
부룬디	요르단	파라과이	바누아투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페루	베네수엘라
카메룬	케냐	필리핀	베트남
카보베르데	키르기스스탄	도미니카 공화국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리바시	르완다	잠비아
칠레	코소보	세인트키츠네비스	짐바브웨
콜롬비아	라오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코모르	레소토	세인트루시아	
콩고공화국	레바논	솔로몬 제도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엘살바도르	
북한	리비아	사모아	
코스타리카	마다가스카르	상투메프린시페	
코트디부아르	말라위	세네갈	
쿠바	몰디브	세이셸	
지부티	말리	시에라리온	
도미니카 연방	모로코	소말리아	
이집트	모리셔스	수단	
에콰도르	모리타니	남수단	

부록 3

선정된 프로젝트 대상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 제출 서류

시네마 뒤 몽드 지원 수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 제작 단계의 지원

1. 지원금산정위원회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 액수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포함하고, 제작자의 서명을 날인한 신청서.
- 기업이 각종 사회분담금(예술가사회분담금(AGESSA), 사회보험징수공단(URSSAF), 미디어전문종사자의 사회분담금 및 공연유급휴가, 실업보험기금)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발급일 6개월 미만).
- 자세한 견적서(프랑스와 해외의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포함할 것)와 업데이트된 자금조달 계획서(이미 '확보'한 자금과 '진행 중'인 자금을 각각 표기).
- 영화에 참여한 파트너의 확인서의 사본(금액을 기입한 편지, 계약서).
- 제작 일정, 작업 일정.

2. 협약 체결 및 지원금의 1회분 지급(60%)을 위한 제출 서류

- 기업이 각종 사회분담금(예술가사회분담금(AGESSA), 사회보험징수공단(URSSAF), 미디어전문종사자의 사회분담금 및 공연유급휴가, 실업보험기금)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발급일 6개월 미만).
- 기업의 법적 지위(이전에 시네마 뒤 몽드 지원의 수혜를 받기 위해 이미 제공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K-Bis) - 발급일 3개월 미만.
- 저작권, 감독의 권리 양도 계약서. 만약 계약서가 영어, 스페인어 혹은 프랑스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번역본이 요구된다.
- 자금조달 계획서에 언급된 모든 파트너가 등장하고, 숫자로 표현된 출자액(과 각자의 기여율)과 예상 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한 공동제작 계획서(다자 혹은 양자간의) - 프랑스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
- 영화 제작과 관련한 위험에 따른 보험 계약서(프랑스어 또는 영어) 혹은 그러한 계약서의 존재를 보증하는 프랑스인 제작자의 증명서.
- 창작 및 배급에 대한 재정적 보상 명목의 권리 양도 서식.
- 자세한 견적서와 업데이트된 자금조달 계획서.
- 상호와 관련 영화의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은행구좌 명세서 원본(복사본이나 인터넷 발체본은 불가).
- ISAN 번호.
- 협약의 서명인의 성함과 직함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의 잔금(40%) 지급을 위한 제출 서류

- 공인회계사에 의해 공증을 받은 비용증명서*(CN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을 사용)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작성된 증빙서류**.
- 협약에 따른 프랑스와 해외 국가에서의 지출 의무 규정을 준수한 사실.

* 비용증명서가 시네마 뒤 몽드 지원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받기 이전에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의 확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연락처: stephanie.morgado@cnc.fr

** 증빙서류는 지원 규정(CN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명시된 인정 가능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음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프랑스 내 지출: 청구서, 임금 지불에 대한 급여명세서, 수당/저작권 청구서, 저작권에 대한 필수 계약서

- 해외 지출:

- 프랑스 기업: 불입청구, 계좌이체 확인서 사본.

- 공동제작 기업: 해외 기업이 지출한 인정 가능한 비용 목록과 그 액수를 포함한 증명서 요약본. 총액은 프랑스 제작사가 지급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중요: 영화의 제목이 증빙서류마다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최종적인 비용 및 자금조달 계획(필요 시, 자금 중 프랑스 기업이 출자한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기술 및 예술 목록.

4. 프로젝트 종료 후에 다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화의 자막을 포함한 DVD 2 부와 프레스북 1 부.
- 영화제 선발 소식 및 극장 개봉일(프랑스와 해외 모두).

시네마 뒤 몽드 지원 수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 후반작업의 지원

1. 지원금산정위원회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 액수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포함하고, 제작자의 서명을 날인한 신청서.
- 기업이 각종 사회분담금(예술가사회분담금(AGESSA), 사회보험징수공단(URSSAF), 미디어전문종사자의 사회분담금 및 공연유급휴가, 실업보험기구)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발급일 6개월 미만).
- 프랑스 내에서의 포스트-프로덕션에 대한 예상 지출을 상세히 기록한 자세한 견적서(프랑스와 해외의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포함할)와 업데이트된 자금조달 계획서(이미 '확보'한 자금과 '진행 중'인 자금을 별도로 표기).
- 영화에 참여한 파트너의 확인서의 사본(금액을 기입한 편지, 계약서).
- 예상 포스트-프로덕션 일정.

2. 협약의 체결 및 지원금의 1 회분(60%) 지급을 위한 제출 서류

- 기업이 각종 사회분담금(예술가사회분담금(AGESSA), 사회보험징수공단(URSSAF), 미디어전문종사자의 사회분담금 및 공연유급휴가, 실업보험기구)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발급일 6 개월 미만).
- 기업의 법적 지위(이전에 세계영화지원의 수혜를 받기 위해 이미 제공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K-Bis) - 발급일 3 개월 미만.
- 저작권, 감독의 권리 양도 계약서와 공동제작 계약서(프랑스어, 영어 혹은 스페인어로 작성).
- 자세한 견적서(프랑스와 해외의 지출 내역을 명시)와 업데이트된 자금조달 계획서.
- 창작 및 배급에 대한 재정적 보상 명목의 권리 양도 서식.
- 상호와 관련 영화의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은행구좌 명세서 원본(복사본이나 인터넷 발취본은 불가).
- 협약의 서명인의 성함과 직함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 잔금(40%)의 지급을 위한 제출 서류

- 공인회계사에 의해 공증을 받은 비용증명서*(CN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을 사용)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작성된 증빙서류**.

*비용증명서가 시네마 뒤 몽드 지원의 규정에 적합하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받기 이전에 프랑스국립영상센터(CNC)의 확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연락처: stephanie.morgado@cnc.fr

** 증빙서류는 지원 규정(CN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명시된 인정 가능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음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프랑스 내 지출: 청구서, 임금 지불에 대한 급여명세서, 수당/저작권 청구서, 저작권에 대한 필수 계약서.
- 해외 지출:
 - 프랑스 기업: 불입청구, 계좌이체 확인서 사본.
 - 공동제작 기업: 해외 기업이 지출한 인정 가능한 비용 목록과 그 액수를 포함한 증명서 요약본. 총액은 프랑스 제작사가 지급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중요: 영화의 제목이 증빙서류마다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최종적인 비용 및 자금조달 계획 (필요 시, 자금 중 프랑스 기업이 출자한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기술 및 예술 목록.

4. 프로젝트가 종료 후에 다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화의 자막을 포함한 DVD 2 부와 프레스북 1 부.
- 영화제 선발 소식 및 극장 개봉일 (프랑스와 해외 모두).